

운 영 위 원 회 부 의 안

의안번호	제2021 - 17호
의 결 년 월 일	2021년 5월 27일

의
결
사
항

재활보조기구 비산재 장애인에 대한 수가 조정(안)
등 심의에 관한 건

제 출 자	의지보조기실장 신 무 현
제 출 년 월 일	2021년 5월 26일

[재활보조기구 비산재 장애인에 대한 수가 조정(안) 등 심의에 관한 건]

1. 의결주문

우리 연구소에서 공급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품에 대하여 산재 장애인 및 비산재 장애인에 대한 수가 조정(안)을 수립하여 심의·의결코자 함.

2. 제안이유

현재 건강보험수가 인상¹⁾으로 인한 비산재 장애인에 대한 수가 적용(본인부담금 등)의 금액 변동 및 기준 부품가 변경으로 본인 부담금 조정(안)을 수립하여 각 센터별 통일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자함. 그리고, 산재 장애인 골반의지 엉덩이관절의지 2종에 대한 본인 부담금에 다소 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비산재 장애인에 대한 수가조정 수립(본인부담금 산출)
- 산재 장애인 골반의지, 엉덩이관절의지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립

4. 심의사항

- 비산재 장애인에 대한 수가조정 수립 적용(본인부담금 산출)
 - 실제소요비용(부품비+제작비) - 수가(기준액) = 차액(본인 부담금)
- 산재 장애인 고관절장식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출
 - 실제 부품 비용 - 수가(기준액) = 차액(본인부담금)

5. 참고자료

- 재활보조기구 비산재 장애인에 대한 수가조정 현황표(의결사항 포함) 1부.

1)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-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(제26조제1항 관련)<개정 2021.2.26.>